

# [제4절]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(2021.1.12, 개정, 2021.7.13, 시행)

### 성장관리계획구역

### (1) 지정대상지역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<u>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</u>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 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(법 제75조의2 제1항).

-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-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
-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- ④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에 따른 지역·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
-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# (2) 지정절차

- ① **의견청취+협의+심의**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<u>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</u>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<u>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법 제75조의2 제2항)</u>.
- ② 지방의회 의견제시 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<u>의회</u>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<u>60일</u>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(법 제75조의2 제3항).
- ③ **협의기간**: <u>협의</u>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<u>30일</u>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(법 제75조의2 제4항).
- ④ 지정고시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 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(법 제75조의2 제5항).



\_[제4절]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

# 2 성장관리계획

### (1) 내용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(법 제75조의3 제1항).

- ① 도로,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
-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
- ③ 건축물의 배치, 형태, 색채 및 높이
- ④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
-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# (2) 건폐율 완화규정

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<u>건폐율을 완화</u>하여 적용할 수 있다(법 제75조의3 제2항).

○ 계획관리지역 : 50% 이하

© 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: 30% 이하

# (3) 용적률 완화규정

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<u>125% 이하</u>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(법 제75조의3 제3항).

#### (4) 타당성 검토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<u>5년</u>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(법 제75조의3 제4항).

####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

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(법 제75조의4).